
체인지플러스보장보험 II 약관

체인지플러스보장보험 II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제 2조 【청약의 철회】
- 제 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 4조 【계약의 무효】
- 제 5조 【계약내용의 변경】
- 제 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제 7조 【계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8조 【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 제 9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제10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1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제14조 【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제15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제16조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의 정의】
- 제17조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정의】
- 제18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 제1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2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21조 【보험금의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제22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제23조 【해약환급금】
- 제24조 【배당금의 지급】
- 제25조 【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 제26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제27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제28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29조 【주소변경 통지】
- 제3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제31조 【대표자의 지정】
- 제3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제3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34조 【보험금 등의 지급】
- 제35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제36조 【계약내용의 교환】
- 제37조 【약관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 제38조 【분쟁의 조정】
- 제39조 【관할법원】
- 제40조 【약관의 해석】
- 제4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43조 【준거법】
- 제4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체인지플러스보장보험 II 약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7조 【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거나 교통재해로 인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조 【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이하“계약일”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6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또는 제14조(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3대암의 진단확정에 의한 암치료비 및 암수술비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9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 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체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

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부활되는 계약의 승낙거절시 보험료 반환, 책임개시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6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4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 【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3대암”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남자일 경우는 남성 3대암을, 여자일 경우는 여성3대암을 말합니다.(이하 남성 3대암 및 여성3대암을 “3대암”이라 합니다)
1. “남성3대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위암, 폐암, 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남성 3대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2. “여성3대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6 “여성 3대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3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3대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3대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3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5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혈액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6조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라 함은 별표8(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수상운수사고, 철도사고를 말합니다.

제17조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라 함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별표9(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 만기축하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제16조(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의 정의)에서 정한 교통재해(이하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항공기 · 선박 · 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제17조(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정의)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및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기타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항공기 · 선박 · 열차 교통재해 장해연금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장해연금 지급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및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기타교통재해 장해연금 지급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 선박 · 열

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항공기 · 선박 · 열차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장해 급여금 지급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및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기타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단,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긴급의료비 지급 (사고당 1회에 한함)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치료비 지급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을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비 지급

제2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단, 상피내암은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교통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통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교통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교통재해로 인하여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1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교통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교통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교통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1.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이나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연금이나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의 지급은 제1급 장해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⑧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긴급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⑨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호의 암치료비는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3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이후 새로이 3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3대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비에서 이미 지급한 암치료비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⑩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호의 경우 3대암과 3대암 이외의 암이 동시에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3대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비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⑪ 피보험자가 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호의 암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⑫ 회사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

내지 제7호의 장해연금의 경우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⑯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가 동시에 발생한 때에는 하나의 사고로 보아 사망보험금,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2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4조 【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5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또는 보장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6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26(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 진단확정 후 암 진단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그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 ⑤ 제26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8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1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암진단확인서, 상피내암진단확인서, 입원확인서, 수술증명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증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교통재해를 증명하는 서류(교통재해로 인한 장해 또는 입원의 경우)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4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7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과 제2회 이후에 지급되는 장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5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⑤ 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만기축하금과 제23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제25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⑥ 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제2회 이후의 장해연금은 제25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2. 보험기간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3. 보험금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35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4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6조 【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7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1계좌(1,300만원)

① 만기축하금 (약관 제19조 제1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교통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지급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② 항공기 · 선박 · 열차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9조 제2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액	사망당시 연령	지급내용
	39세 이하	5,000만원
	40세 이상	2,500만원

③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9조 제3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 였을 때	
지급액	사망당시 연령	지급내용
	39세 이하	5,000만원
	40세 이상	2,500만원

④ 기타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9조 제4호)

지 급 사 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및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액	2,500만원

⑤ 항공기 · 선박 · 열차 교통재해장해연금
(약관 제19조 제5호)

지 급 사 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장해당시 연령	39세 이하	40세 이상
	제1급 장해	매월 200만원씩 100회 지급	매월 100만원씩 100회 지급
	제2급 장해	매월 100만원씩 100회 지급	매월 50만원씩 100회 지급

⑥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장해연금
(약관 제19조 제6호)

지 급 사 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장해당시 연령	39세 이하	40세 이상
	제1급 장해	매월 200만원씩 100회 지급	매월 100만원씩 100회 지급
	제2급 장해	매월 100만원씩 100회 지급	매월 50만원씩 100회 지급

⑦ 기타 교통재해장해연금 (약관 제19조 제7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및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제1급 장해	매월 100만원씩 100회 지급
	제2급 장해	매월 50만원씩 100회 지급

⑧ 항공기 · 선박 · 열차 교통재해장해급여금
(약관 제19조 제8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장해당시 연령	39세 이하	40세 이상
	제3급 장해	2,500만원	1,250만원
	제4급 장해	2,000만원	1,000만원
	제5급 장해	1,500만원	750만원
	제6급 장해	1,000만원	500만원

⑨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장해급여금
(약관 제19조 제9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장해당시 연령	39세 이하	40세 이상
	제3급 장해	2,500만원	1,250만원
	제4급 장해	2,000만원	1,000만원
	제5급 장해	1,500만원	750만원
	제6급 장해	1,000만원	500만원

⑩ 기타교통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19조 제10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및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제3급장해	1,250만원
	제4급장해	1,000만원
	제5급장해	750만원
	제6급장해	500만원

⑪ 긴급의료비 (약관 제19조 제11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지급액	10만원	

⑫ 암치료비 (약관 제19조 제12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제8조 (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지급액	진단시연령	39세 이하 40세 이상
	3대암	1,000만원 2,000만원
	3대암 이외의 암	1,000만원
	상피내암	200만원

⑬ 암수술비 (약관 제19조 제13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임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지급액	수술시연령	39세 이하	40세 이상
	3대암	300만원	600만원
	3대암 이외의 암	300만원	
	상피내암	60만원	

- 주) 1. 암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2. 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이후의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만기축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장해당시 연령”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표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1. 시행)중“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광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분류항목	분류번호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킬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급	신체장애
제3급	<p>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p> <p>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p> <p>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p> <p>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p> <p>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p> <p>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p> <p>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p> <p>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발생하였을 때</p>
제4급	<p>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p> <p>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p> <p>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p> <p>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p> <p>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p>

등급	신체장애
제4급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급	신체장애
제5급	<p>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p> <p>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p> <p>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p> <p>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p>
제6급	<p>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되었을 때</p> <p>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p> <p>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p> <p>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p> <p>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p> <p>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p> <p>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p>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도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애, 굴절 장해, 안구운동 장해, 조절 장해, 복시 같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증주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sum \frac{\text{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text{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times \text{비례치}$)이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손가락의 장해”

가.“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하방의 $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 이상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

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 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별표4)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C43 - 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 C49 C50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1 - C58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 C63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4 - C68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9 - 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73 - 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6 - C80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81 - 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남성3대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남성3대암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 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위의 악성신생물	C16
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3. 담낭의 악성신생물	C23
4. 기타 및 상세불명 담도 부위의 악성신생물	C24
5. 기관의 악성신생물	C33
6.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4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여성3대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위의 악성신생물	C16
2.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3. 자궁경의 악성신생물	C53
4. 자궁체의 악성신생물	C54
6. 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C55
7. 태반의 악성신생물	C58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7)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8)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 분류표

이 보험에서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 분류표에 따른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수상 운수사고, 철도사고를 말합니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1.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탑승자가 다친 동력 항공기사고	V95
탑승자가 다친 무동력 항공기사고	V96
기타 명시된 항공 운수사고	V97
2. 수상운수사고	
익수의 원인이 된 선박사고	V90
기타 손상의 원인이 된 선박사고	V91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	V92
익수의 원인이 아닌 선박사고가 없는 선상사고	V9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수상운수사고	V94
3. 철도사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로 다친 보행자	V05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5
운수사고에서 다친 열차 또는 철도 차량 탑승자	V81

- (주) 1. 사고가 없는 선박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수영자 또는 잠수부의 익수사고는 수상운수사고에서 제외됩니다.
2. 열차 또는 철도차량 수리고내의 사고, 원형기 관차고 또는 전차대에서의 사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관련되지 않은 철도구내의 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철도사고는 철도사고에서 제외됩니다.
3. 상승이나 강하 중 압력의 변화에 노출은 항공기사고에서 제외됩니다.

(별표9)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카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ータ,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돛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가”또는“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체인지플러스
특정사망특약

체인지플러스 특정사망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 2조 【특약 내용의 변경】
- 제 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 제 5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6조 【보험료의 납입】
- 제 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제 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 9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인】
- 제10조 【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인】
- 제11조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의 정의】
- 제12조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정의】
-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14조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5조 【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17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등

- 제1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체인지플러스 특정사망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단,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그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2조 【특약 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

까지로 합니다.

제 5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정한 암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주계약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주계약 별표4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주계약 별표4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0조 【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3대암”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남자일 경우는 남성 3대암을, 여자일 경우는 여성3대암을 말합니다.(이하 남성 3대암 및 여성3대암을 “3대암”이라 합니다)
1. “남성3대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위암, 폐암, 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주계약 별표5 “남성 3대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2. “여성3대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주계약 별표6 “여성 3대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3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3대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3대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3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1조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라 함은 주계약 별표9(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수상운수사고, 철도사고를 말합니다.

제12조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라 함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피보험자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암 사망보험금 지급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제11조(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의 정의)에서 정한 교통재해(이하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 항공기 · 선박 · 열차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 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제12조(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정의)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교통재

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교통재해로 인하여 제13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가 동시에 발생한 때에는 하나의 사고로 보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망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의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 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① 암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1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사망당시 연령	39세 이하	40세 이상
	3대암		1,000만원
	3대암 이외의 암	500만원	500만원

② 항공기 · 선박 · 열차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2호)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항공기 · 선박 · 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지급액	5,000만원

③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3호)

지 급 사 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지급액	5,000만원

주) 암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